

토지 소유자는 공용 도로를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을까요?

공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4년에 김천시 소재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매수한 임야에는 김천시의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며, 사찰의 승려, 탐방객, 인근 주민들이 오래 이용해온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천시도 이 길을 관련법령에 의거해 30년 이상 관리해 왔습니다.

임야의 주인인 원고는 김천시를 상대로 이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철거·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단

형법 제185조의 ‘육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법 제185조가 ‘공로(公路)’에 해당하는 도로를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고 판시하였다.

즉 어떤 토지가 공용 도로인 공로가 되었다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철거하거나 도로의 통행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포장도로 철거 인도 청구를 인용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